

2003회계년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및 의견서

2003년도 평창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04. 5. 10 ~ 5. 29(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신교선(총괄)

- 검 사 위 원 : 김진석(세입분야, 공유재산, 기금, 금고)

- 검 사 위 원 : 정장용(일반회계세출)

- 검 사 위 원 : 강동석(특별회계세입세출,채권,채무,물품)

평창군결산검사위원

2003회계년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평 창 군 수 귀하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로부터 평창군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4년5월10일부터 2004년5월29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을 포함한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제반법규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제46조, 제47조
- 지방재정법제41조, 제42조, 제110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8~40조
-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
-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7조

2. 검사기간 : 2004. 5. 10 - 5. 29(20일간)

3. 위원별 검사분야

- 대표위원 신교선 : 결산총괄
- 위 원 김진석 : 일반회계세입, 재산 및 기금의결산, 금고결산
- 위 원 강동석 : 특별회계 세입세출, 채권, 채무, 물품의 결산
- 위 원 정장용 : 일반회계세출, 계속비, 이월비

4. 검사방법

-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 실시
- 계수의 파오 여부를 증빙서류와 상호대조 검사

5.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

1) 세입분야

- 결산서와 징수부 대사
-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의 적정성
- 체납액 정리 및 미수납액 관리의 적정성
- 결손처분의 적정성
- 여유자금의 적정한 관리 및 이자수입의 증대노력

2) 세출분야

- 결산서와 지출장부의 대사
- 법제, 원칙등에 입각한 적정한 지출여부
-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적정여부
- 예산전용 및 불용처리의 타당성
- 예비비 운영의 적정성
- 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3)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 결산서와 세입징수부, 지출장부 대사
- 주택융자금 관리
- 국공유재산, 대부재산등 재산의 성실한 관리 여부
-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상태

6. 검사결과 및 의견서 : “별첨” 과 같음.

2004년 5월 29일

대표검사위원

신 교 선



검 사 위 원

강 동 석



검 사 위 원

김 진 석



검 사 위 원

정 장 용



2003회계년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2003회계년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2003년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회계별 예산 규모 및 세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 결산총괄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년 도 (2002)	220,390,128,000	246,722,287,841	242,350,075,314	259,248,350	4,112,964,177
당해년도 (2003)	196,900,037,000	296,179,815,398	292,174,220,112	143,261,720	3,862,333,566

가. 세입결산 개요

- 2003년도 실제수납액 292,174,220,112원은 예산액의 148.38%로서 95,274,183,112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8.64%로 나타남.

※ 2002년도

- 실제수납액 : 242,350,075,314원 (예산액의 109.96%)
- 징수결정액 : 246,722,287,841원 (예산액의 111.94%)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년도(2002)	220,390,128,000	40,210,621,300	260,600,749,300	155,667,218,913
당해년도(2003)	196,900,037,000	95,609,602,490	292,509,639,490	198,017,992,408
익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95,609,602,490	9,323,927,897	86,682,856,401	538,794,815	4,315,010,296
84,939,191,470	9,552,455,612	94,156,227,704	671,151,075	8,545,885,159

가. 세출결산의 개요

- 200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6% 감소한 196,900,037,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95,609,602,4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2,509,639,490원임.
- 지출액은 198,017,992,408원으로 예산현액의 67.70%임
이월사업비 중 자금없는 이월액은 없었으며,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예산현액(㉑)	이월사업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㉒)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당해연도 (2002)	260,600,749,300	162건 95,609,602,490	95건 66,737,045,010	53건 6,141,792,000	14건 22,730,765,480	37%
당해연도 (2003)	292,509,639,490	169건 84,939,191,470	86건 46,931,673,260	62건 10,149,930,920	21건 27,857,587,290	29%

- 3)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2%에 해당하는 9,552,455,612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545,885,159원으로 예산현액의 2.9%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년 도 (2002)	194,829,490,000	219,372,678,866	215,927,842,846	259,248,350	3,185,587,670
당해년도 (2003)	172,422,118,000	252,054,065,855	248,222,467,395	143,261,720	3,688,336,740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248,222,467,395원으로 예산액의 143%이며,
징수결정액은 252,054,065,855원으로 예산액의 146%에 달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8.4%임.

※ 2002년도

- 실제수납액 : 215,927,842,846원 (예산액의 110%)
- 징수결정액 : 219,372,678,866원 (예산액의 112%)

2)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청회)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2)	194,829,490,000	33,674,164,350	228,503,654,350	146,810,213,701
당해년도(2003)	172,422,118,000	76,195,276,020	248,617,394,020	184,126,050,253
이월액	집행잔액	차입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76,195,276,020	5,498,164,629	69,117,629,145	519,826,255	3,313,445,070
56,032,426,730	8,458,917,037	64,096,417,142	649,372,385	7,414,618,027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172,422,11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6,195,276,02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48,617,394,020원임.
- 이월사업비는 총 148건에 56,032,426,730원으로 예산현액의 22.5%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	명사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년도 (2002)	228,503,654,350	149건 76,195,276,020	90건 63,207,656,790	51건 6,052,072,000	8건 6,935,547,230	33%
당해연도 (2003)	248,617,394,020	148건 56,032,426,730	81건 45,012,223,260	59건 7,715,011,720	8건 3,305,191,750	23%

3.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연 도 (2002)	25,560,638,000	27,349,608,975	26,422,232,468	0	927,376,507
당해연도 (2003)	24,477,919,000	44,125,749,543	43,951,752,717	0	173,996,826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43,951,752,717원으로 예산액의 179%이며, 징수결정액은 44,125,749,543원으로 예산액의 180%이고,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9.6%임.

※ 2002년도

- 실제수납액 : 26,422,232,468원 (예산액의 103%)
- 징수결정액 : 27,349,608,975원 (예산액의 106%)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2)	25,560,638,000	6,536,456,950	32,097,094,950	8,857,005,212
당해년도(2003)	24,477,919,000	19,414,326,470	43,892,245,470	13,891,942,155
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제계잉여금
19,414,326,470	3,825,763,268	17,565,227,256	18,968,560	1,001,565,226
28,906,764,740	1,093,538,575	30,059,810,562	21,778,690	1,131,267,132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24,477,91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43,892,245,470원임.
- 이월사업비는 총 21건에 26,074,652,130원(공기업제외)으로 예산현액의 75%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02)	25,120,164,090	9건 18,345,506,470	4건 3,329,388,220	0건 -	5건 15,016,118,250	73%
당해년도 (2003)	34,450,614,470	21건 26,074,652,130	5건 1,855,450,000	3건 2,413,919,200	13건 21,805,282,930	75%

※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임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

(단위 : 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2002)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03)
		계	수납액	지출액	
총 계	2,130,363,090	406,942,570	606,494,570	199,552,000	2,537,305,660
재해대책기금	415,486,460	△6,409,650	136,242,350	142,652,000	409,076,810
재난관리기금	105,739,980	25,202,890	25,202,890	-	130,942,870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103,227,440	△400,000	6,600,000	7,000,000	102,827,440
노인복지기금	746,218,890	102,969,000	137,969,000	35,000,000	849,187,890
장애인복지기금	450,892,840	128,063,730	128,063,730	-	578,956,570
평창군장학기금	205,697,480	48,304,170	63,204,170	14,900,000	254,001,650
여성발전기금	103,100,000	109,212,430	109,212,430	-	212,312,430

가. 기금결산의 개요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7개로

기금현재액은 2002년도 2,130,363,090원 보다 406,942,570원이 증가된 2,537,305,660원을 관리하고 있음.

2) 채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2002)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03)	
			계	원금	이자		
합 계	2,634,347,634	1,193,330,328	867,081,012	786,078,902	81,002,110	2,960,596,950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주택사업	1,533,592,344	430,454,388	513,902,502	513,902,502	-	1,450,144,230
	주민소득지원	1,100,755,290	761,614,230	352,989,240	271,987,130	81,002,110	1,509,380,280
	의료급여	-	1,261,710	189,270	189,270	-	1,072,440

가. 보유채권 현재액은

- 2002년말 현재액 2,634,347,634원에서
- 2003년도에 1,193,330,328원이 발생, 867,081,012원이 소멸되어
- 2003년도말 현재액은 2,960,596,950원임.

3) 채 무

(단위 : 원)

회계별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9,791,245,670	△3,845,919,640	2,800,394,000	6,646,313,640	15,945,326,030	
일	반 회 계	7,334,365,670	△2,160,349,670	2,800,394,000	4,960,743,670	5,174,016,000	
특 별 회 계	소	계	12,456,880,000	△1,685,569,970	-	1,685,569,970	10,771,310,030
	상	수도사업	11,446,200,000	△1,381,600,000	-	1,381,600,000	10,064,600,000
	주	택 사업	1,010,680,000	△303,969,970	-	303,969,970	706,710,030

가.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 2002년도말 현재액 19,791,245,670원에서
- 2003년도에 3,845,919,640원을 상환하여
- 2003년도말 현재액은 15,945,326,030원임.

4) 공유재산

○ 용도별 현황

(단위 : 원)

용도별	구 분	2002년말현재액	2003년말현재액	증감(△)
합	계	76,054,120,000	84,162,943,000	8,108,823,000
행 정 재 산	계	41,746,034,000	50,124,949,000	8,378,915,000
	공공용재산	27,226,973,000	35,400,685,000	8,173,712,000
	공용 재산	14,350,308,000	14,564,911,000	214,603,000
	기업용재산	168,753,000	159,353,000	△9,400,000
보	존 재 산	-	-	-
잡	종 재 산	34,308,086,000	34,037,994,000	△270,092,000

가. 2003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2002년말 현재액76,054,120,000원에서 8,108,823,000원이 증가한 84,162,943,000원으로

- 토지 124,314,000㎡ 64,399,613,000원
- 건물 45,800㎡ 11,645,107,000원
- 기타(기계,기구) 24건 9,400,000원은 감소되어 0원임.

5) 물 품

(단위 : 천원)

정수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2003년말 현재액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960	수량	808	16	-	16	4	-	4	820
	금액	2,944,713	402,084	-	402,804	18,016	-	18,016	3,328,781

가. 2002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002년말 현재액 2,944,713천원보다 384,068천원이 증가한 3,328,781천원으로 신규 취득 402,807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8,016천원이 감소함.

5. 세입·세출외 현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2003년 증감내역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243,657,678	△315,087,627	3,591,120,118	3,906,207,745	928,570,051
부 담 금	-	-	-	-	-
위 탁 금	117,834,777	△17,823,160	406,654,710	424,477,870	100,011,617
보 증 금	226,205,080	△20,369,230	54,378,130	74,747,360	205,835,850
일시보관금	594,922,383	△98,947,100	1,681,930,720	1,780,877,820	495,975,283
잡종금등기타	304,695,438	△177,948,137	1,448,156,558	1,626,104,695	126,747,301

가. 2003년도말 현재액은 928,570,051원으로 2002년도말 1,243,657,678원보다 315,087,627원이 감소함.

6. 검사결과

□ 총 평

2003년도 평창군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각종 장부 및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검사한 결과 관련공무원들의 꾸준한 법규연찬 및 정확한 결산에 대한 의지로 계속과오는 없었으며, 재무운영의 적법성, 효율성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가. 평창군세입은 전년대비 20.5% 증가하였으나 관련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재정보전금 등의 증액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8.3% 감소하였으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 나. 세출분야에서는 사업비 확보이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비 예산편성 이후에는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부당하게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 또는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업무용차량 구입등 35건의 세출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

□ 주요지적사항

- 가.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로 당해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또는 수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용처리함
- 나. 회계연도 말(11월) 동절기 시작시점에 예산배정을 함으로서 사업시기 촉박 등으로 부득이 예산을 이월시키는 문제점 발생

- 다. 이월사업(명시,사고)은 최소화되어 회계연도내 행정목적이 달성되어야 함에도 사업계획의 확정지연이나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관행처럼 매년 반복되는 것은 지양 되어야 함

- 라. 수해복구사업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복구되어야 함
사업자체가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에 대비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임

- 마. 승인된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년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며 사업기간 연장등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업계획이 요구됨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

지 적 사 항 목 록

번호	제 목
1	불용예산 발생
2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배정 지연
3	사업예산 읍·면재배정처리로 사업추진 능률성 저해
4	지방세(세외수입)징수철저
5	채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이행
6	군 금고검사
7	본청 및 읍·면사무소 물품대장정리 및 관리소홀
8	한해대책 양수기(전기모터형)교체
9	흙탕물 저감사업시기 일실우려
10	상수도 사용요금 채납액 일소
11	미탄면 소방파출소 신축공사
12	노산성 지표조사 학술용역
13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14	진부생활체육시설
15	문화재관리
16	다수교연결도로공사
17	농어촌마을하수도처리시설(노동리)지연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호 : 1

○ 제목 : 불용예산 발생

○ 현황

▶ 업무용차량 구입30,000천원등 35건 164,525천원의 세출예산 불용처리

○ 문제점(개선사항)

▶ 예산수립 후 집행사유 미발생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한 예산이 35건 발생

▶ 군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감사자 의견

○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로 당해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편성 시 삭감 또는 수정을 통하여 필요한 타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번 호 : 2

○ 제 목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배정 지연

○ 현 황

- ▶ 예산액 : 300,000천원
- ▶ 집행액 : 20건 292,394천원
- ▶ 방림면 계촌4리 농로포장공사 외 11건 194,781천원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2003.11.4 일괄 배정함

○ 문제점(개선사항)

-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예상치 못한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
- ▶ 2003년도 집행예산 중 11건 194,781천원을 연말 동절기 시작시점에 읍·면에 배정하여 시기촉박으로 이월시켜 집행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감사자 의견

- 연중 수시 발생하는 민원을 계획대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다고는 하나 연말에 배정하여 다음해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호 : 3

○ 제목 : 사업예산 읍·면재배정처리로 사업추진 능률성저해

○ 현황

- ▶ 예산 재배정 : 230건 12,149,178천원
- ▶ 사업비 재배정 : 83건 7,644,700천원(62%)

○ 문제점(개선사항)

- ▶ 소규모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추진이 적기에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읍·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 ▶ 모든 사업예산을 군 관련부서에 편성한 후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서 능률성을 저해하고 있음

□ 감사자 의견

-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변 호 : 4
- 제 목 : 지방세(세외수입)징수철저
- 현 황

지방세 과징상황

(단위 : 천원)

예산액 A	12월까지 예산액 B	조정액 C	징수액 D	결손액	미납액	징수비율		
						A:D	B:D	C:D
36,823,044	36,823,044	40,313,273	36,068,976	288,307	3,955,990	98.0	98.0	89.5

○ 문제점(개선사항)

- ▶ 고질체납 및 부도로 인한 미수액 증가

감사자 의견

-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및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납부이행촉구
-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이행
- 고액체납자 현지출장 방문징수 독려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번 호 : 5

○ 제 목 :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이행

○ 현 황

▶ 지방세법제30조의3제1항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사유발생시

○ 문제점(개선사항)

▶ 결손처분 미이행으로 지방세(세외수입)미수액증가

▶ 읍·면에서 요구한 결손처분에 대한 미이행으로 미수액 증가

감사자 의견

○ 지방세법제30조의3 제1항3호, 제30조의2 제3호, 제30조5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 될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 요망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번 호 : 6

○ 제 목 : 군 금고검사

○ 현 황

- ▶ 금고검사기간 : 2003.3.3 ~ 3.19.(1회)
- ▶ 검사대상 : 28개소(군금고1개소, 수납대행점27개소)
- ▶ 주요지적사항
 - 계좌미구분(도세,군세,특별회계) : 농협미탄지소 외 17개소
 - 자금이체지연 : 농협방림지소의 8개소
 - 일계표관리불량 등 기타 : 군지부의 7개소

○ 문제점(개선사항)

- ▶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
- ▶ 업무 미 숙지

검사자 의견

- 현행 군금고 검사를 년1회이상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분기1회(년4회)로 시정 요망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번 호 : 7

○ 제 목 : 본청 및 읍·면사무소 물품대장정리 및 관리소홀

○ 현 황

▶ 본청 각 실과소 및 읍·면 공히 물품출납 대장과 정수·비정수품의 관리에 있어 현품과 대장상 착오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문제점(개선사항)

▶ 본청 각 실과소 및 읍·면 물품관리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관리 상태가 불량함

검사자 의견

○ 2004년 재물조사시(2004.6.1~6.30) 철저한 지침교육과 각 실과소 물품 관리관의 지도·감독으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번 호 : 8
- 제 목 : 한해대책 양수기(전기모터형)교체
- 현 황
 - ▶ 2001년 한해대책용 중앙지원분 양수기 40대는 농경지에 전기선 유입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한해(旱害)시 사용 불가함
- 문제점(개선사항)
 - ▶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양수기가 사장되어 교체가 불가피 함

검사자 의견

- 전기모터형 양수기 40대를 납품회사에 매각 또는 엔진형으로 교체하여 한해(旱害)대책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번 호 : 9

○ 제 목 : 흙탕물 저감사업시기 일실우려

○ 현 황

▶ 도암지구 6개소 공사비479,450천원의 예산을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사업진도가 부진함

○ 문제점(개선사항)

▶ 농작물 수확 후 착공된다면 공기부족으로 사업 부실우려가 있음

검사자 의견

- 농작물과 관계되는 사업장은 파종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촉구 요망
- 사업장 인근 농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최대한 공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 호 : 10

○ 제 목 :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일소

○ 현 황

- ▶ 방림면과 용평면을 제외한 6개면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99건에 9,366,730원으로 수납 촉구 요망

○ 문제점(개선사항)

- ▶ 전년도 결산감사시 대화면의 경우 1건의 미수도 없었는데 반해 금년에는 13건이나 발생하였으며 이는 상수도관리 담당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됨

□ 감사자 의견

- 상수도관리 담당자나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근무자세로 상수도사용 요금을 체납해서는 안된다는 주민의식을 고취 시켜야 함

읍·면별 체납현황

(기간 : 2003.1.1~12.31, 2004.5.27 현재)

총계		평창읍		미탄면		대화면		용평면		진부면		도임면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99	9,366,730	34	2,684,180	11	3,041,770	13	724,250	6	948,970	15	1,057,170	20	910,390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 호 : 11

○ 제 목 : 미탄면 소방파출소 신축공사

○ 현 황

- ▶ 2002.5.14 : 2002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 확정통보
(강원도소방행정과⇒평창군건설과통보(도비80,000천원))
- ▶ 2002.8. 9 : 1회추경예산확보(군비140,000천원)
- ▶ 2003.6.11 : 설계용역
- ▶ 2003.7. 7 : 설계용역 납품
- ▶ 2003.8.25 : 신축공사 시행결의
- ▶ 2003.9. 9 : 신축공사 계약
- ▶ 2003.9.15 : 신축공사 착수

○ 문제점(개선사항)

- ▶ 당초 건설과 재난관리팀의 부지선정이 잘못되었고 부지 재선정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부지선정과정에서 재무과 관재계로 이진하여 공사기간이 더욱 지연되었음

□ 검사자 의견

- 부지선정의 정확성 검토 후 사업추진
- 사업시행부서 선정 후 부서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건설과⇒재무과)
- 건축물 1개소 사업비 116,764,900원의 사고이월 사업은 신중성, 타당성 등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음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번 호 : 12

○ 제 목 : 노산성 지표조사 학술용역

○ 현 황

▶ 노산성 지표조사 학술용역 : 2003년 당초예산 50,000,000원

○ 문제점(개선사항)

▶ 용역계약의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납품기간 못 맞춤

감사자 의견

○ 용역계약이 적기에 이루어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했어야 하나 담당부서의 원만치 못한 일처리가 엿보임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번 호 : 13

○ 제 목 :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 현 황

- ▶ 위 치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70-13
- ▶ 사 업 량 : 건강관리실 1동(100평)
- ▶ 총사업비 : 990백만원(부지매입비290, 건축비700)
- ▶ 사업기간 : 2003 ~ 2005 (3년간)

○ 문제점(개선사항)

- ▶ 주민건강관리실 신축의 주목적이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의 낙후된 복지문화 향상으로 건강한 농촌환경 조성이라고 생각되나 건평100평에 부지(1712㎡)매입비 261,080천원은 과도한 지출이라 판단됨

검사자 의견

○ 주민 복지시설은 필요하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됨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 호 : 14

○ 제 목 : 진부생활체육시설

○ 현 황

- ▶ 위 치 : 진부면 하진부리 1289-64
- ▶ 사 업 비 : 31억원
- ▶ 사업기간 : 2001 ~ 2003
- ▶ 부지면적 : 58,826㎡
- ▶ 사업내용 : 잔디구장2면(21,846㎡), 잔디광장(807㎡), 족구장3면녹지
용지(20,209㎡), 게이트볼장(1,068㎡)관리시설 등
- ▶ 실시결계완료 : 2001. 10. 14
- ▶ 주차장설치공사완료 : 2002.5.28(사업비133,300천원)

○ 문제점(개선사항)

- ▶ 기존 진부궁도장(오대정)신축공사는 진부생활체육시설부지내에 있었으나 새로운 지역인 진부면 하진부리 742-1번지로 옮겨 신축공사비 5억원의 예산을 낭비함

□ 검사자 의견

○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 할 때 예산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임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 호 : 15

○ 제 목 : 문화재 관리

○ 현 황

▶ 명사이월사업(1,670,000천원)

- 평창향교대성전보수비 : 200,000천원
- 상원사 도난방지시설비 : 70,000천원
- 상원사청량선원보수비 : 300,000천원
- 월정사대법륜전신축사업비 : 400,000천원
- 지장암요사채신축사업비 : 700,000천원

▶ 사고이월사업(721,268천원)

- 오대산사고지진입로수해복구사업비 : 258,411천원
- 월정사8각9층석탑출토유물보존사업비 : 142,857천원
- 상원사중창권선문보수비 : 200,000천원
- 월정사서별당기와보수비 : 120,000천원

○ 문제점(개선사항)

- ▶ 문화재보호와 관리는 필요하나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려는 종교단체의 의식전환 요망
- ▶ 관광객 입장수입, 신도들의 법전기도금, 종교재산 등을 고려할 때 매년 균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 감사자 의견

- 당해년도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 지어야 하나 매년예산을 이월하여 명사이월 및 사고이월비가 2,391,268천원에 달함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변 호 : 16

○ 제 목 : 다수교 연결 도로공사

○ 현 황

- ▶ 도로확포장 : L=250m B=8m
- ▶ 암거 2개소 : L=18m
- ▶ 횡 배수관 : L=38m (D600)
- ▶ 용수로측구 : L=260m
- ▶ 사 업 비 : 495,435천원

○ 문제점(개선사항)

- ▶ 설계변경을 통해 장비운송, 가설사무실설치, 교통안전관리비등 사업 예산 절감효과는 있었으나 연결도로로 볼 수 없으며 오해소지 있음

검사자 의견

-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간 협의로 인해 예산절감과 사업조기착공의 효과는 있었으나 신중하게 검토 한 후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었음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번호 : 17

○ 제목 : 농어촌 마을하수도 처리시설(노동리)지연

○ 현황

- ▶ 사업위치 : 용평면 노동리 아랫삼거리~이승복기념관
- ▶ 실시설계용역계약체결 : 5.27~7.25(60일)
- ▶ 계약금액 : 25,634,000원
- ▶ 시설공사총가시행결의 : 2003.9.25
- ▶ 사업량 : 오수관로 L=5,240m
- ▶ 오수처리시설 Q=100ton/ms 1개소
- ▶ 준공예정일 : 2003.12.31(절대공기120일)
- ▶ 공사기성부분검사 : 2003.12.06 현재 15.2%
- ▶ 공사중지지시통보 : 2003.12.20 현재 39%

○ 문제점(개선사항)

- ▶ 상하수도 처리시설은 농산물생산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반기에 발주하고 동절기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처리하여야 함에도 사업시기를 미뤄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음

검사자 의견

-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사의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사업비를 이월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번호	계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	불용예산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불용처리로 인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해 ○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거나 사업 계획변경 또는 취소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시 삭감 또는 수정하여 필요한 타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상설 교육장 기계구입의 경우 성능 저하로 새로 구입하려 하였으나 수리하여 사용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의 경우 강원도 등록업체를 선정하라는 지침에 따라 부득이 추진 중이던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업에 따라 사유가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을 세울 것이며 회계연도 내에 부득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정리추경시 삭감 또는 수정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전실과
2	소규모주민숙사업 예산배정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예상치 못한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 ○ 2003년도 집행예산 중 11건 194,781천원을 연말 동절기 시작시점에 읍·면에 배정하여 시기촉박으로 이월시켜 집행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 연중 수시 발생하는 민원을 계획대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다고는 하나 연말에 배정하여 다음해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실과 및 읍·면에서 신청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신속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함은 물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를 연말에 배정하여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기획감사실

번호	제 목	주요사항 및 의견	처리 계획	관련부서
3	사업예산 읍·면재배정 처리로사업추진능률성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추진이 적기에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읍·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 모든 사업예산을 군 관련부서에 편성한 후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서 능률성을 저해하고 있음. ○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추진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해당 실과의 검토를 거친 후, 읍면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기획감사실
4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세외수입)징수 철저 ○ 고질채납 및 부도로 인한 미수액 증가 ○ 미 수납액에 대한 관리 및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납부이행 촉구 ○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이행 ○ 고액채납자 현지출장 방문징수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납자에 대해 월1회 독촉장 발송 및 납부 독려 ○ 실익있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실시 ○ 고액채납자에 대한 개인별 징수담당제 실시 및 현지출장 방문징수계획 추진 	재무과
5	채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 발생시 결손 처분 이행 ○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에는 지체 지체없이 결손처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멸시효, 무재산, 납부무능력자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예정임 	재무과
6	군금고검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금고검사 철저 ○ 현행 년1회 실시하는 금고검사를 년4회 실시로 시정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하여 시정 조치하겠음 	재무과

번호	제 목	주요사항 및 의견	처리 계획	관련부서
7	본청 및 읍·면사무소 물품대장정리 및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출납대장 및 정수, 비정수품 관리 불량 ○ 2004재물조사시 철저한 지침교육과 지도감독으로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재물조사기간 중(200.06.01-2004.06.30) 정수 및 비정수에 대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산입력 및 수정을 완료하고, 차후 물품의 구입과 동시에 전산처리하여 수기관리시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전실·과 읍·면
8	한해대책 양수기 (전기모터형)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양수기가 사장되어 교체가 불가피 함 ○ 전기모터형 양수기 40대를 납품회사에 매각 또는 엔진형으로 교체하여 한해(旱害)대책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가뭄시 국민성금으로 지원된 양수기로 매각 등은 불가하고,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사용이 가능하므로 한해시 활용하고자 함. 	건설과
9	흙탕물 저감사업시기 일실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사업으로 농작물 수확 후 착공된다면 공기부족으로 사업부실 우려 ○ 사업장 인근농가와 긴밀한 연락을 하여 최대한 공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파종전 시행중인 사업장은 6월중에 완료예정이며 다른 사업장도 공기내 완료토록 조치하겠음 	환경복지과
10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림면과 용평면을 제외한 6개면 수도요금 체납액이 99건에 366,730원으로 수납 촉구 요망 ○ 상수도관리 담당자나 관계 공무원이 적극적인 근무자세로 상수도사용요금을 체납해서는 안된다는 주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급수조례40조에의거 체납액 2개월이상 체납시 정수 처분 실시 ○ 검침 및 고지서 교부시 수용가별 자진납부제도 및 상수도사용료 자동이체 유도로 체납액 일소 - 상수도체납액 일소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읍·면시달 지역도식과-3697, 5163호 	지역도시과

번호	제 목	진척사항 및 의견	처리 계획	관련부서
11	미탄면소방출장소신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건설과 재난관리팀의 부지선정이 잘못되었고 부지재선정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부지선정과정에서 재무과 관계로 이전하여 공사기간이 더욱 지연되었음 ○ 부지선정의 정확성 검토후 사업추진 ○ 사업시행부서 선정시 부서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건설과⇒재무과) ○ 건축물 1개소 사업비 116,764,900원의 사고이월 사업은 신중성, 타당성 등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업무는 도의 사무로서 군에서 마땅히 업무를 대행할 부서가 없던 관계로 부서선정이 지연되었고 결과적으로 사업추진 전반이 지연되었음 ○ 향후 부지매입 완료 후 사업비를 신청하여 사업추진의 지연이 없도록 하겠음 ○ 또한 2004.6.1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으므로 소방업무의 대행은 재난관리부서로 일원화하여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음 	재무과
12	노산성지표조사 학술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계약의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납품기간 못 맞춤. ○ 용역계약이 적기에 이루어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했어야 하나 담당 부서의 원만치 못한 일처리가 엇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사업은 2003년 10월 강원대학교 박물관과 계약체결하여 올 10월 완료 예정임. ○ 차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음 	문화관광과
13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건강관리실 신축의 주목적이 주민의 낙후된 복지문화 향상으로 건강한 농촌환경조성이란 판단되나 건평100평에 부지(1,712m²)매입비 261,080천원은 과다 지출로 판단됨 ○ 주민복지시설은 필요하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주민건강관리실은(목욕탕)대화 주민의 55%가 거주하는 시가지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감정평가 2개기관의 단가산정에 의하여 부지를 매입함 향후 주민이 요구하는 건강관리실로 신축하겠음 	환경복지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리 계획	관련부서
14	진부생활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진부궁도장(오대정) 신축공사는 진부생활체육 시설부지내에 있었으나 새로운 지역인 진부면 하진부리742-1번지로 옮겨 신축공사비 5억원의 예산을 낭비함. ○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예산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부생활공원 조성공사 국토이용계획을 결정하기 전,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체육공원내에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을 요청하여 궁도장을 체육공원 내에 조성하게 되면 국토이용계획시 녹지비율인 40%에 미달하여 추가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부지를 이전하게 되었음. ○ 추가 공정없이 2004년8월에 준공예정임. 	문화관광과
15	문화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의 의식전환 필요 ○ 매년 군비지원 타당치 못함 ○ 명사이월과 사고이월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와의 수시 협의 ○ 사업의 연내 마무리추진 ○ 차후 조속한 사업추진 및 마무리 노력 	문화관광과
16	다수교 연결 도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을 통해 장비운송, 가설 사무실 설치, 교통안전 관리비등 사업예산 절감효과는 있었으나 연결도로로 볼 수 없으며 오해소지 있음 ○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간 협의로 인해 예산 절감과 사업조기착공의 효과는 있었으나 신중하게 검토 한 후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대교 개통으로 연결 도로사업의 시급성과 공사구간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예산 절감 및 주민불편 조기해소 등을 기하였으나, 지적사항과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 할 시 신중하게 검토 처리하겠음 	건설과
17	농어촌 마을하수도 처리시설(노동리)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생산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반기에 발주처리하여야 함에도 사업시기를 미뤄 예산을 명사이월시킴 ○ 초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사업비를 이월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리마을하수도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 ○ 농산물생산시기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건설과